



전자서명 관련 법제의 개선과제에 관한 일고찰

- 전자서명과 전자전자증권의 국제유통성 확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Legal Issues for Related Electronic Signature Acts in Korea -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Connected with e-Signature and e-B/L

저자 (Authors)	심종석, 정희원 Chong-seok Shim, Hee-won Chung
출처 (Source)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0(2) , 2010.6, 59-75 (17 pages)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0(2) , 2010.6, 59-75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541139
APA Style	심종석, 정희원 (2010). 전자서명 관련 법제의 개선과제에 관한 일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0(2), 59-75.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전자서명 관련 법제의 개선과제에 관한 일고찰 -전자서명과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유통성 확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Legal Issues for Related Electronic
Signature Acts in Korea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Connected with e-Signature and e-B/L-

심 종 석* · 정 희 원**

Chong-seok Shim · Hee-won Chung

... Abstract ...

Various laws have been passed internationally to facilitate commerce by the use of electronic messages and signatures i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The intent is to ensure the validity and legal effect of contracts entered into electronically. For instance, electronic signature definitions of E-Sign'(Sec 106) are the term electronic signature means a method of signing an electronic message that identifies and authenticates a particular person as the source of the electronic message and indicates such person'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message. In the view point of UETA(Sec. 2) is that's means an electronic sound, symbol, or process attach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a record and executed or adopted by a person with the intent to sign the record. In the other hand,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a simple bill of lading but it is provided (or the transaction takes place) through electronic means. These are electronic signature, and the information is transmitted electronically. This has been able to take place through electronic messages. According to the electronic signature acts in Korea, this law applies where electronic signatures are used in the context of commercial activities and for the purpose of this law electronic signature means data in electronic form in, affix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a electronic message, which may be used to identify the signatory in relation to the electronic message and to indicate the signatory'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message.

Key Words : Electronic Message, Electronic Signature, Electronic Bill of Lading

논문 접수일 : 2010년 5월 6일, 1차 수정일 : 2010년 6월 1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6월 10일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 주저자.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I. 서론

전자무역은 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등 다양한 전자적 플랫폼을 무역업무처리를 위한 기반으로 웹기반 윈스톱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에 접목하여, 물리적 운송을 제외한 전 과정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당해 목적상 의사표시의 매개(intermediary of communications)로서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무역이 전자문서를 매개로 이상의 전자적 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적 특징은, 무역마케팅 대상의 확대, 무역업무 전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무역업무 처리의 일관성 증대에 따른 경제적 이해의 확대 및 여타 다양한 무역정보의 획득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무역의 순기능적 특징, 곧 경제적 실효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절차상 기존 종이문서(paper based document)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상거래에 비할 경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실질적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데, 예컨대 전자계약 성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선택문제, 무체물(invisible goods) 내지 디지털 정보의 관세부과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물품과 서비스 특징에 관련된 문제, 정보교환에 따른 보안문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은 한편으로 전자무역상 전자문서 내지 전자적 수단의 유통전전 및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s)의 전달과정에 기하여 예견

가능한 실질적 문제점 내지 장애에 대한 개선 내지 보완의 당위를 함의한다.

이상의 문제점 내지 장애에 기하여 본 고에서 주시하고자 하는 사안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정보보안을 통한 신뢰성 확보 문제인데, 곧 당해 사안은 전통적 종이문서를 매개로 한 상거래에서는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았던 인증(certification) 또는 무결성(integrity)에 대한 보장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달리 전자무역이 상례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상거래 정보의 위·변조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안전성을 담보하여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전자문서를 매개로 한 전자무역의 기반구축은 상거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적 주체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특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안으로 집약되는데, 환언하면 이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정보는 대개 용이하게 변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변조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한 무역거래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와 동일함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이상의 논점은 전자문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결성 및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자서명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필수요건이라는 대의를 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현재 전자무역에 있어 웹기반 윈스톱 single window상 uTradeHub에서는 전자적으로 구현된 선하증권(B/L)과 상업송장(I/V) 및 보험증권(I/P) 등의 회환취결을 위한 서류들을 최초 발행자로부터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을 거쳐 궁극적으로

는 개설은행(opening bank)에까지 온라인상으로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해 두고 있다.

그러나 해외 개설은행 내지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등에서는 현재까지 전자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써 상호표준화 및 연계체계 등의 인프라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반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관련 법제상 국제적 유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공인전자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는 법기능상 전자무역 활성화에 반하여 그 지원체계의 모순 내지 실무적용상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우리 상법의 전자선하증권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전자선하증권(electronic B/L) 발행에 있어 공인전자서명(certificate of electronic signature)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적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서 또한 국제상거래를 대비한다는 전제 하에 전자서명의 상호인정협정을 규정하고 있음은 단적인 예표라 할 수 있다.****

결국 전자서명에 관한 유관법령 등에서 이 같이 공인전자서명 사용에 따른 강제조항을 존치해 두고 있음에 따라 현재 개별 법령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국제상거래에서의 활용에서는 법적 장애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독소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전자무역 글로벌 연계를 위한 법

적 인프라 정비차원에서,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행 법령의 개선 내지 보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자서명 관련 국외 법제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전자무역에 있어 화환취결 시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유통을 위한 상법상 공인전자서명 유관조항의 실무적용상 문제점 및 개정·보완과제를 도출함과 동시에,***** 전자무역의 기반인프라로서 전자서명을 규율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상 국제 상호인정 조항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동 법상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개선방안을 법적, 상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외 전자서명 관련 법제의 현황

1. EU의 전자서명지침

EU는 1999년 12월 부로 공포된 전자서명지침(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 Electronic Signatures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2001년 7월 이후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있다. 이에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제·개정함으로써 동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하에서 보는 바

* 대통령령, 「제20829호」, 2008. 08. 04.

** 동 규정 제6조 제1항, 제8조 제2항 등.

*** 법률, 「제10008호」, 2010. 02. 04.

**** 동 법, 제27조 제2항.

***** 본 검토에서는 전자식 선하증권의 국제유통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공인전자서명 관련 법률(하위법령 포함)에 대하여 해외연계 관련된 미비점·모순점 및 개선점 등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와 같이 독일과 같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 입법례가 있는 반면, 영국과 같이 어느 정도 자국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한 입법례도 있다.

동 지침은 각양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배경은 법적 효과를 가진 전자서명을 위한 EU 기준의 창설에 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인가의무의 포기, 검열을 위한 고유한 시스템 창설 및 자발적 인정제도의 도입에 근거한 전자서명 제도의 구조적 변경에 대한 요구, 공인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규정, 인증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국제적 인증서비스 규정,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동 지침은 전자서명의 기술방식을 디지털 서명방식 외에 여하의 전자서명기술을 공히 인정하고 있는데, 곧 동 지침에서는 전자서명을 인증방법으로 이용되며, 다른 전자적 데이터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형식의 데이터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지침은 EU 역내 어느 회원국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을 명정하고 있는 바, 이에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2. 미국의 전자서명법제

미국은 1995년 유타주를 시작으로 현재 모든 주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두고 있는데, 연방차원에서는 2000년 ‘국내·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이하 ‘E-Sign’)**이 대표적 입법례이다.

E-Sign은 법적 효력에 있어 전자서명을 전통적 종이서명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고 있는데, 결국 E-Sign에 대한 발효로 전자기술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과 서명, 서류수집과 보관, 공시사항의 송·수신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E-Sign은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기관의 허가·감독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에 이를 각 주의 전자서명법에서 위임해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각 주의 전자서명 관련 법제의 현황으로서 우선 유타, 워싱턴, 네바다,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주 등은 허가(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달리 플로리다를 비롯한 기타 주에서는 당해 허가제에 견주어 보다 유연하고도 완화된 규정을 존치해 두고도 있다.**** 요컨대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방의 고유한 법·제도적 특성에 따라 정부규제보다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다분한 바, 이는 인증기관에 관하여도 공히 정부허가보다는 개별 인증기관이 자유롭게 인증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portal.etsi.org/esi/Documents’에서 전문 참조. 관련내용의 상세는 정완용 외, 「유럽 주요국가 전자서명 인증정책 및 제도 조사·분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정책연구 02-01), 2002, 12. 이하 본 고에서 참조하고 있는 웹사이트[URL]는 본 고 제출시점 현재 웹상에 현시(display)되고 있음을 참고한다. 기술편의상 프로토콜명(http://)은 생략하였다. 아울러 편집상 표기되지 않은 하위 URL은 참고문헌에서 일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전문은 ‘www.fca.gov/Download’ 하이퍼 링크에서 참조.

*** E-Sign, Sec. 102.

**** 유타주 등 초기 입법례는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UNCITRAL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의 영향을 받은 주에서는 허가제도를 완화해 두고 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 등은 허가 및 면허에 관한 규정이 없다.

록 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조달 등 정부와의 거래 시 공히 필요한 한도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특이할 사항이다.*

한편 연방차원에서 통일주법전국대위원회의(NCCUSL)가 1999년 7월 승인한 통일전자거래법(ETA)은 현재 45개 이상의 주에서 채택하거나 또는 ETA 일부를 주법에 수용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거래(transaction)**에 적용하고 있다.

ETA는 생래적으로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과 미국 통일상법전(UCC)의 관련조항을 적의 조정하여 성안한 입법으로, 그 핵심내용은 종이문서와 동일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같은 시각에서 전자서명의 효력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 내 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E-Sign과 ETA 및 여타 주 법간의 법적용에 따른 저촉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데, 이에 E-Sign은 각 주에서 ETA를 채택한 경우 ETA 제101조(상사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유효성에 관한 일반규칙을 정한 규정)의 규정을 개정·제한 또는 대체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결국 ETA가 E-Sign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공통사안은 ETA와 E-Sign 모두 특정 전자서명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술중립주의(the principle of technical neutrality)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Verisign, Entrust Tech., Baltimore Tech., Digital Signature Trust Co., Arcanvs Inc., ID Certify Inc. 등이 전자서명에 관한 인증기관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독일의 전자서명법제

독일의 경우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에 관한 조건규제법(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을 제정해 두고 있다. 동 법은 단일법이 아닌 원격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Tele Dienstes gesetz),***** 원격서비스에서의

* 유타주는 전자서명의 대상을 디지털 전자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당해 전자서명이 인증된 인증국이 발행한 증명서이며, 공개키를 통한 검증이 가능한 경우 문서상의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에 대하여는 인정기관인 상무국을 통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95년 주법전에 공적 기관과 전자통신의 경우에 한하여 수기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전자서명규정을 두었다. 공적 기관과 통신인 경우 면허(의무적)를 정보기술국으로부터 받도록 하였으며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국에 자격인정증명서를 연1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주 법전, Sec. 16.5).

** ETA 적용범위는 거래(transaction)의 정의에 의해 제한되는데, 즉 모든 서면과 서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에만 적용된다(ETA, Sec. 3). 이 경우 거래는 '영업행위, 상거래상의 또는 정부의 업무와 관련한 2인 이상의 당사자간 발생하는 하나 또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된다(ETA, Sec. 2, (16)). 아울러 ETA 제5조에 의해 ETA는 전자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 간에만 적용된다(ETA, Sec. 5). 곧 ETA는 전자거래를 강제하는 법이 아닌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E-Sign, Sec. 102, (a).

**** 전문은 'www.bsi.de' 참조.

***** 전문은 'www.iid.de/iukdg/gesetz' 참조.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Tele dienste datenschutz gesetz),* 디지털서명법(Signatur gesetz)**을 포함하여 형법·질서위반법·청소년에게 해로운 문서배포에 관한 법·저작권법·가격표시법 등의 법률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은 EU 전자서명지침에 따라 전자서명의 소위 기술중립주의를 채택하여 새로운 전자서명법으로 개정되어 2001년 5월 22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전자서명이 확실하게 행해지고 전자서명의 위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제정취지에 두고 있다. 한편 인증절차에 관하여는 전자서명에 대한 정의·소관관청·인증기관면허·증명서 발행·인증기관의 고지의무·증명서의 내용·증명의 정치·문서화·데이터의 보호·주무당국의 감독·디지털 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동 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공인전자서명에 대하여 수기서명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규정체계는 공인전자서명의 법적효력에 한하여 민법, 행정절차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 독일은 연방통신우편감독청(RegTP)****이 전자서명 감독기관으로서 최상위인증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RegTP 예하에 공인인증기관으로 연결되는 복수계층의 구조를 확립해 두고 있다. 이에 공인인증기관은 법적 효력을 갖는 가입자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최상위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에 대응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사용해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은 확인필 증을 교부해 주는 소위 임의적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법률관계에서 전자서명이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 인증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인증역무제공자는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신뢰성과 전문지식,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법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독일에는 Deutsche Telekom, DATEV eG***** 등 16개 기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www.dreport.de/dr-ref-datev'.

* 현재 RegTP은 인증기관과 전자서명 제품에 대해 새로 2가지 마크를 사용(2002. 3. 19)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수기서명에 준하는 공인전자서명을 식별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accredited'라는 문구가 있는 마크는 RegTP의 인정을 받고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적·관리적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이 사용하며, 당해 문구가 없는 마크는 RegTP가 전자서명법의 일반적 보안기준에 합치하는 제품에 부여하고 있다.

* 전문은 상계 각주 하이퍼 링크에서 참조.

** 전문은 'www.signaturrecht.de' 참조.

*** 동 법의 규정내용의 상세는 심종석,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청림출판, 491-501면.

**** RegTP는 1996년 8월 1일 부 시행된 통신법(Tele kommunikations gesetz : TKG)에 의해 연방경제노동부(Bundes ministrium fur Wirtschaft und Arbeit : BMWA)에 소속된 연방기관으로서 지위를 점한다.

4. 영국의 전자서명법제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25일 부 시행되고 있는 전자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에서 전자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DIT)에서 정보통신 및 전자서명 관계를 다루고 있다. 현재 영국은 10여 개 인증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에는 CESG(Communications and Electronic Security Group)라는 RootCA(Root Certificate Authority)가 있고, RootCA 예하에 정부 각 부문의 인증기관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민간부문에는 RootCA가 없고, tScheme**의 승인을 얻은 각 산업별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한편 영국의 민간부문은 여타 국가와는 다르게 계층적 인증관리체계가 없고 자율적 비영리기구인 tScheme에 의한 자발적인 승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곧 영국 전자서명규칙이 수용한 EU 전자서명지침 Annex II***상의 조건을 갖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기관의 요건에 따라 tScheme이 기준을 정하고 인증기관에게 승인한 후 승인마크 사용을 허락하고 있으며, 각 인증기관은 무역산업부(DIT) 장관에 등록하고, 장관은 이들 인증기관을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5. 프랑스의 전자서명법제

프랑스는 2000년 3월 EU 전자서명지침에

따라 정보기술에 대한 증거법 적용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adaptation du droit de la preuv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signature électronique)****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법률은 정보기술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증거에 관한 프랑스 민법을 개정하는 법률로 제정된 특징이 있다. 아울러 동 법률의 제정으로 전자서명지침에 관한 EU 표준을 수용하게 되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적절하게 식별될 수 있고, 당해 문서가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작성되고 보존된다는 유보 하에서 종이문서와 같이 증거가 될 수 있고(동 법률, 제1조 제3항), 또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법률, 제3조). 아울러 전자서명에 관한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에,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곧 서명이 전자적 형식인 경우에는 당해 서명에 대해서는 관련 증서와의 연관성을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식별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법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지고, 서명자의 동일성이 보장되고 문서의 진정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반대의 입증에 없는 한 이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동 법률 제4조)고 명시하고 있다.

6. 일본의 전자서명법제

일본은 2001년 이후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關す

* 전문은 'www.opsi.gov.uk/acts/acts2000'.

** 상세는 'www.tscheme.org'.

*** 상세는 'www.enisa.europa.eu/act'.

**** 상세는 'www.marche-public.fr'.

る法律)*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는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허가제 등과 같은 규제조항은 존재해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특정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대신(총무성·경제산업성·법무성 장관 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인증업무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인증업무인정제도는 특정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아닌, 곧 특정인증업무에 국한하여 인정하는 방식이다. 요컨대 동 법률은 전자서명에 관한 전자기록의 진정성립의 추정, 특정 인증업무에 관한 공인제도 및 기타 연관된 필요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서명의 원활한 이용을 확보하고 정보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유통 및 정보처리의 촉진을 도모하는데 제정취지를 두고 있다(제1장 제1조).

동 법률은 제정취지에 기하여 그 주요 골자를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전자서명의 법적 위치를 명료히 확립하기 위하여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본인에 의한 적절한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전자적 기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제2장 제3조), 둘째 인증업무에 있어 임의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업무 중 일정한 기준을 갖춘 특정인증업무에 있어 이용자의 신뢰

성에 기초하여 임의의 인증제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2장 제4조), 셋째 동 법률의 제반 규정 및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정부가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조사업무·교육·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제2장 제5조) 등이다. 결국 일본의 동 법률은 종래의 상거래에 관하여 수기서명 및 인감과 동일하게 전자서명의 법률상 취급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인증제도의 도입 및 이용자의 신뢰성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전자거래의 안정성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법을 공동 입법한 총무성·경제산업성·법무성에 각각 인증기관의 인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부가 직접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지정조사기관을 두어 공인인증업무의 인정에 필요한 실질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특정인증업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정부기관인 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 JQA)를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증업무에 대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특별히 지정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그 배경에 두고 있다. 현재 (주)일본인증서비스(JCSI), Digital Notary Authority(DNA), 제국데이터뱅크주식회사(TDB) 등 총 8개 기관이 특정인증업무 인정을 받아 당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전문은 'law.e-gov.go.jp/htmldata/H12.

** 이 경우 특정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을 한 자가 당해 디지털정보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당해 디지털정보가 전자서명된 후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될 수 있는 정보(동 법, 제2조 제1항)중에서 그 방식에 따라 본인만이 서명할 수 있고, 주무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하는 인증업무를 말한다(동 법, 제2조 제3항).

*** 전문은 'www.meti.go.jp/policy'.

〈표 1〉 전자서명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비교

구분	인증기관에 대한 규제	법적효력 및 업무범위	비 고
한국	요건을 구비한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전자서명법상 효력 부여	사안에 따라 상이한 법적 효력 부여
미국	규정 없음(초기 주법에서 허가제를 규정하였으나 후발 주들은 등록제 등 완화된 제도를 채택)	모든 전자서명에 대해 법적 효력 인정(주법에서 제한)	
독일	법정 요건을 구비한 인증기관이 주무관청에 신고, 당해 주무관청 확인 후 확인필증 수여(임의적 공인인증기관 인정제도)	규정 없음(개정민법상 공인전자서명 서명으로서 효력을 인정)	법으로 정하지 않은 전자서명인 경우 그 이용이 임의적임
영국	인증기관 규정 없음(자율적 비영리기구 iScheme에 의한 승인시스템으로 운영)	전자서명, 전자서명 발생, 통신방법, 서명과정 등을 증명하는 경우, 개인에게도 전자서명 인정	
일본	요건을 구비한 자를 특정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특정인증업무자격인정제도)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을 경우 전자적 기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	

7. 기타 국외 전자서명법제

1)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의 전자서명 관련법은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으로 동 법은 1998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자거래 및 인증기관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인증기관에 대한 자발적 인정구조(voluntary licensing scheme)를 채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는 정보통신개발국(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 IDA)** 산하 인증조정기관(CCA)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업무계획·조직도·인증시스템의 기술명세서·적합성감사(compliance audit) 결과 등에 따라 작성한 인증업무준칙을 CCA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해 결과에 따라 CCA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에게 공인 신뢰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 동 법은 전자거래(인증기관)규정(Electronic Transaction(CA) Regulation 1999)과 인증기관에 대한 보안지침(Security Guideline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내용의 상세는 「www.ida.gov.sg」

** IDA는 1999년 12월 싱가포르 정부 통신정보기술국(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 MCIT) 산하기관으로서 국가 IT 정책 결정 및 관련 산업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2) 대만의 경우

대만의 경우 2002년 4월 이후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Law)*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주무부처는 대만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MOEA)이다. MOEA는 2001년 공개키 기반구조(PKI)를 확립하고 도메인간 상호 연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MOEA는 2003년 6월 이후 인증기관의 정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PKI 상호연동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대만에서는 TaiCA를 비롯하여 15개 정도의 인증기관이 당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홍콩의 경우

홍콩의 경우 전자거래규정(Electronic Transaction Ordinance)**을 제정하여 이를 2000년 이후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통하여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종이 문서 및 수기서명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은 인증기관의 운영지침을 이른바 자발적 인정구조(voluntary recognition scheme)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Hong

Kong Post를 비롯하여 3개 인증기관이 당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HiTRUST사***는 현재 중국·대만·홍콩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VeriSign사와도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상황이다.

4)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1997년 디지털서명법(Digital Signature Act)****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인증기관운영국(Controller of CA : CCA)이 공인인증기관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기관으로는 DigiCert*****가 있다. 인증기관은 정부와 민간의 구별은 없지만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DigiCert의 인증서가 사용된다.

III. 국내 전자서명 관련 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1. 상법 및 동 시행규정(대통령령)

상법은 2007년 8월 3일 개정을 통해 전자선하증권(전자선하증권)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1991년 호주의 해상물품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과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7, 2003)상의 관련 내용에 이은 세계 3번째의 선도적 입법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법의 시행

* 동 법은 인증서비스제공자가 인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주무부처에 인증업무준칙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시행세칙(Enforcement Rules of the Electronic Signatures Law)과 외국 인증서비스 제공자 허가를 위한 규정(Regulations Governing Permission of Foreign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s) 및 인증업무준칙의 기술 사항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Required Information for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상세는 'www.japanpkiforum.jp'.

** 전문은 'www.ogcio.gov.hk'.

*** 상세는 'www.hitrust.com/newsite'.

**** 전문은 'www.commonlii.org'.

***** 'www.digicert.com'.

을 위한 대통령령인 상법의 전자전자서명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전자전자서명의 발행 및 양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있는 바, 이는 전자전자서명 발행 후 해외유통을 전제로 하는 전자전자서명의 본질과는 부합되지 않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의 신용장 개설은행 등이 현재 우리나라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할 경우 실효규정이란 간주된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에서의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곧 상법 제862조 제2항에서는 전자전자서명에는 동 법 제85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전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전자전자서명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동 법의 당해 규정은 운송인의 전자서명이 전자전자서명의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5항에서 발행·배서의 전자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상 필요시 행정부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절차가 완화된 상황이다.

한편 동 규정 제6조에서 운송인은 전자전자서명을 발행하려면 상법 제85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운송물의 수령지 및 인도지,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운송인 또는 그 대리

인의 서명 등의 정보가 포함된 발행등록 신청 전자문서에 운송인의 공인전자서명과 송하인이 전자전자서명 발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고 명정하고 있다.

한편 동 규정 제6조에서는 전자전자서명의 발행요건으로 운송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운송인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전자서명을 발행코자 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인전자서명을 첨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및 하위법령상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외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신원확인인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

- 부판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 ②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외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 ④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6.30).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국(법)인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제8조에서 전자선하증권의 관리자가 전자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송신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 경우 양도 신청 전자문서에는 전자선하증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양수인에 관한 정보양도인의 공인전자서명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양도 신청을 수신한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양도에 관한 기재한 후 즉시 양수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양수인에게 당해 내용을 송신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양도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부가요건으로 전자선하증권을 양수하려는 양수인은 미리 등록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상 전자선하증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관리자가 양도인이 되는 경우 역시 우리나라의 공인전자서명을 첨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전자선하증권의 양수인은 미리 등록기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부재한바, 이는 결국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이용약관)에 위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기관의 업무준칙 및 등록절차 상에도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데, 일례로 등록단계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하고 있어 개인이나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전자서명법 및 동 시행규정(행정자치부령)

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2002년 4월부터 발효된 개정에서는 크게 전자서명의 기술중립성, 공인인증기관의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제한적 효력인정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사설전자서명도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효력을 법으로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국정부와의 정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법률상 인증기관 및 인증서에 대한 인정 원칙이 국가별로 다

르고, 기술상 각국의 인증기관마다 상호인증 기술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나 인증기관과 일일이 상호인정협정 및 상호인증 기술협력을 해나가는 것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상호인정 및 인증의 개념을 본문구성에 부합하게 재구성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결국 전자서명법상 상호인정 협정에 기대하기보다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효과에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전자선하증권을 비롯한 무역서류의 국제유통을 위해 국내 전자서명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대상업무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른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상법의 전자선하증권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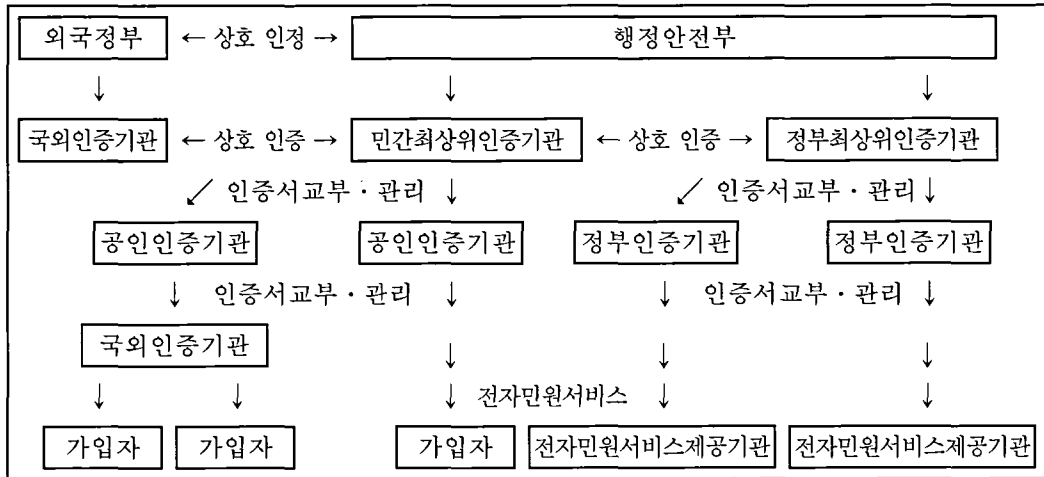
전자서명법 제3조에서는 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관하여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인인증서외의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하여도 법률상으로 용인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다만 이는 당사자 간에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시된 개정이유의 주요 골자는 ① 특정한 기술로 한정하던 전자서명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가능한 모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함(동 법 제2조 및 제3조), ②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의 안전운영 여부의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함(동 법 제18조의3 및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③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동 법 제26조의2), ④ 외국정부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과 인증서에 대하여 우리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함(법 제27조의2제4항) 등이다.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1.12.31>.

*** 법률, 「9705호」, 2009. 05. 22. 본 고의 논제에 기하여 전자무역촉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상서는 심종석, 서민교, “현행 전자무역촉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2009, pp. 201-219. 전문을 참조.

〈표 2〉 상호인정 및 상호인증의 개념



약정에 따른 것으로 그 효력의 범위가 한정되며, 공인인증서와 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 제기된다.

IV. 요약 및 결론

1. 법적 개선과제

전자선하증권을 포함하는 전자무역서류의 국제유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은 크게 삼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외당사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공인전자서명의 사용만을 법률상으로 강제하고 있는 모순을 개선하고, 둘째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선택된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셋째는 국외 당사자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전자선하증권 사용자 정보등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법의 전자선하증권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현재 조문으로서 제6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발행등록 신청 전자문서에 운송인의 공인전자서명과 송하인이 전자선하증권 발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운송인은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발행등록 신청 전자문서에 운송인의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포함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전자서명과 송하인이 전자선하증권 발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8조 제2항의 ‘양도인의 공인전자서명’으로 국한된 조문내용 또한 ‘양도인의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포함한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전자서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같은 시각에서 타당한 입법적 배려일 것이다.

아울러 제8조 제5항에서 '전자선하증권을 양수하려는 양수인은 미리 등록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내용을 '전자선하증권을 양수하려는 양수인은 미리 등록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이용약관에 따른 정보 등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당해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촉진을 위한 규정상 합목적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배려라 생각된다.

이 같은 법적 개선방향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첫째 전자선하증권의 해외 유통을 위해서는 상법 시행령의 개정, 등록기관의 이용약관 및 업무절차의 보완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전자서명의 사용이 요청된다고 하는 사실, 둘째 법률 개정범위 최소화 및 절차 단순화에 기하여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므로 이를 개정하기 보다는 상법의 하위법령인 상법의 전자선하증권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이상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는 사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전자서명 상호인정협정, 상호인증 이외의 대안 모색이 현실적일 것인 바, 전자무역문서의 해외활용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것이 다양한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이나 다양한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보다 월등히

효율적일 것이라는 사실, 넷째 내부절차의 정비와 미래지향적 표준등록을 선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업무절차 및 이용약관 등에서 해외사용자의 고려와 영문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 등이다. 당해 사안은 전자선하증권을 전자문서표준으로 국내·외 표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관련 이슈를 선점하여 향후 주도권 다툼에 대비함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을 부각할 수 있다.

2. 상무적 개선과제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은 공인전자서명 외에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첫째 다양한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이 각 인증기관별 인증기술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예상되는 까닭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것이 등록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수용되기 쉽고, 둘째 전자선하증권 이용약관 및 그 과정과 절차상에 있어 제반 플랫폼의 영문화, 해외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정보 입력 내용 보완 등이 긴요한 차제에 있으며, 셋째 전자선하증권의 문서표준을 국내표준(전자거래진흥원) 및 국제표준(UN/CEFACT)으로 등록(시도)함으로써 향후 전자선하증권 확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이점이라 판단된다.

한편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인증의 실무적 용상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는 전자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역업체가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으로서 현재 공인인증기

관*에서 제공되는 인증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상호 연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인증서의 발급 및 그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인증기관의 공신력에 따른 문제, 수수료 문제 등이다.

전자인증과 관련 실무적용상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증서 상호인정의 문제점과 관련, 국내 5개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인증서(비용)가 상호 인정되지 않는 것은 거래대상에 따라 5개의 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동 문제를 국가간 전자무역으로 확장시킬 경우 전자인증제도는 전자무역에서 적의 활용되지 못하거나 때로는 장애로 기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기술적·법률적 조화 또는 통일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하는 사실, 둘째 전자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강화 필요성에 대한 당위, 셋째 현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무역업체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하히 한정된 부분에서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전자무역의 현재상황이 전통적 무역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인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 넷째 이

상의 사안들은 요컨대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인증 활성화의 담보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다.

참 고 문 헌

- 심종석, 유병옥, 오현석, 심갑영,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2003, 청림출판
- 심종석, 서민교, “현행 전자무역촉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2009, pp. 201-219.
- 정완용, 유럽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및 제도 조사·분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책연구 02-01), 2002, 12.
- ‘상법의 전자전자증권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829호」, 2008, 08, 04).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705호」, 2009, 05, 22).
- ‘전자서명법’(법률, 「제10008호」, 2010, 02, 04).
-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關する法律
- ‘Digital Signature Act’
-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
-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Signature Law’
- ‘Electronic Transaction Act’
- ‘Electronic Transaction Ordinance’
- ‘Enforcement Rules of the Electronic Signatures Law’
-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der

*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총 5개의 인증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한국전산원 제외).

** 당해 인증요건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특수목적용과 범용 인증서로 구분된다. 이 경우 표준화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범용인증서에 한한다.

- Rahmen bedingungen fu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 dienste’
- ‘Regulations Governing Permission of Foreign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s’
- ‘Regulations on the Required Information for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
- ‘Signatur gesetz’
- ‘Tele kommunikations gesetz’
- ‘Tele dienste daten schutz gesetz’
- ‘Tele dienste gesetz’
-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
- ‘Electronic Transaction Act’
- ‘law.e-gov.go.jp/htmldata/H12/H12HO102.html’
- ‘portal.etsi.org/esi/Documents/e-sign-directory.pdf’
- ‘www.bsi.de/esig/basics/legalbas/sigg1997.pdf’
- ‘www.commonlii.org/my/legis/consol_act/dsa1997181’
- ‘www.digicert.com’
- ‘www.dreport.de/dr-ref-datev’
- ‘www.enisa.europa.eu/act/rm/cr/laws-regulation/e-business/directive-1999-93-ec’
- ‘www.fca.gov/Download/Public%20Law%20106-229%20E-Sign.pdf’
- ‘www.hitrust.com/newsite/about_eng05.asp’
- ‘www.ida.gov.sg/Policies%20and%20Regulation/20060920100740.aspx’
- ‘www.iid.de/iukdg/gesetz/teledienstegesetz.pdf’
- ‘www.japanpkforum.jp/shiryou/sankou/Taiwan_new_era.pdf’
- ‘www.marche-public.fr/Marches-publics/Textes/Lois/loi-2000-230-droit-preuve.htm’
- ‘www.meti.go.jp/policy/netsecurity/digital-sign-law.htm’
- ‘www.ogcio.gov.hk/eng/eto/download/es12004081114.pdf’
- ‘www.opsi.gov.uk/acts/acts2000/ukpga_20000007_en_1’
- ‘www.signaturrecht.de/siggesetz/siggesetz.html’
- ‘www.tscheme.org’